

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7. 6. 14 -----한승정 의원 외 13인
나. 회 부 일 자 : 2007. 7. 3
다. 상 정 일 자 : 2007. 7. 11 (제15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
제1차 도시위원회 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한승정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소외받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면서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
- 따라서 병원, 약국 이용시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“저소득 노인계층”이라 함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자 중 사하구 거주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말한다.(안 제2조)
-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하구지역 가입자이며,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한다.(안 제3조)
-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.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2008년도 본예산 편성

다. 입법예고 : 2007. 6. 15 ~ 2007. 7. 5 (20일간)

- 제출 의견 : 조례 제정 찬성 (사하구 신평동 159-1번지 박종남 내과의원)

라. 기타사항 :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에 따른 단체장 의견 청취

- 의견 내용 : 내년부터 시행되는 「기초노령연금법」 관련 규정과 구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는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□ 본 조례 제정 건은

-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소외받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면서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
- 저소득 노인계층에 대하여 제도적 보호장치를 법정화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복지서비스 확충에 크게 기여 한다고 생각되며
- 서울, 대구, 광주 등 대도시 자치구와 경기 파주시, 강원 정선군, 전남 광양시, 경북 안동시 등 시·군을 비롯하여 부산진구, 서구, 남구 등 전국적으로 40여개에 이르는 자치단체에서 기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공적부조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

□ 위 조례 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나

작금의 어려운 구의 재정상태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지원 규모나 지원대상자를 적의 조정하여 추진함이 재정운영상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